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571

제출연월일: 2023. 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일부 면제 등 의무매출채권 제도개선 요청('22. 11. 29.)에 따라 채권 매입대상의 면제범위를 확대하여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시 매입 면제 기한 연장(안 제5조제1항)

- '23. 12. 31. → '26. 12. 31.(3년)

나. 각종 계약 체결 시 채권 구입 기준 상향 조정(안 별표 1)

- 1,000천원 이하 계약 시 면제 → 2,000만원 미만 계약 시 면제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등 (※ 붙임)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12. 16. ~ 2023. 1. 5.(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3)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
- 4) 갑질영향심사 : 개선의견 없음
- 5)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6)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대구광역시지역개발 기금을 설치하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를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 조"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시비출연금"을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역개발공채(이하 "공채"라"를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일반회계등에서"를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로, "운용하고자"를 "운용하고자 일반회계 등에서"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공채의 발행 및 등록)"을 "(채권의 발행 및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얻어 공채를"을 "받아 채권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를 "채권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 채"를 "채권"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공채의 매입대상 등)"을 "(채권의 매입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준에 따라 공채를"을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따라 채권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00cc 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제외)"를 "(2,000cc 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

호 중 "신고·등록을 신청하는"을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하여 공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을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로, "공채발행 대상에 대하여"를 "채권발행 대상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이 연도중"을 "따라 발행하는 도시철도 채권이 연도 중"으로, "의한 공채를"을 "따른 채권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채매입대상자중"을 "채권매입대상 중"으로, "의하여 공채매입"을 "따라 채권매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매입대상중"을 "채권매입대상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의 공채매입"을 "제1항에 따른 채권매입"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공채의 상환 및 이율)"을 "(채권의 상환 및 이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채"를 "채권"으로, "거치후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을 "거치 후 일시상환하며, 발행이율"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채의 상환"을 "채권의 상환"으로, "최초상환 개시일 1월전"을 "최초 상환 개시일 1개월 전"으로, "시공보"를 "시 공보"로, "의하여 상환개시공고를 하여야 하며 공채의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는"을 "따라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채권의 원리금 상환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채"를 "채권"으로, "아니하며"를 "않으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고려하여"를 "고려하여 기준금리의"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공채업무의 위탁)"을 "(채권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제목 외의 부분 중 "공채"를 "채권"으로, "규칙이"를 "규칙으로"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상・하수도사업"을 "상하수도사업"으로 한다.

제9조 중 "상·하수도사업에 우선 융자하되"를 "상하수도사업에 우선 융자하되,"로, "지역간"을 "지역 간"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으로 하되"를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하되,"로, "만료전이라도"를 "만료 전이라도"로, "사업완료시"를 "사업완료 시"로, "하며"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를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규정의범위"를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의한다"를 각각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참작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를 "원리금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기금운용에 있어"를 "기금운용 시"로, "「지방재정법」 제78조에 따라 당해회계년도"를 "「지방회계법」 제39조에 따라 같은회계년도"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을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轉用)"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해서는"을 "경우전용자금에 대한"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등"을 "이자증대를 위한 예치 등"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공채상환"을 "채권상환"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기금운용 계획)"을 "(기금운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채를"을 "채권을"로, "신청하는"을 "신청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공채"를 "채권"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호 중 "기금운용관 :"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분임기금운용관 :"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금출납원 :"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시에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를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설치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중 "공채발행등"을 각각 "채권발행 등"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제5조제1항 관련)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 1,000cc 이상 2,000cc 미만 (2) 2,0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4/100 ″ 5/100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1,000cc 미만의 경형은 제외한다)	취득세 과표의 3/100
다.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 미만의 경형은 제외한다)	취득세 과표의 3/100
라. 사업용 승용자동차 (1,000cc 미만의 경형은 제외한다)	취득세 과표의 2/100
마. 사업용 승합자동차 (1,000cc 미만의 경형은 제외한다)	취득세 과표의 1/100
바. 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 미만의 경형은 제외한다)	취득세 과표의 1/100
사. 비사업용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1) 소형(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취득세 과표의 4/100
(2) 중형(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다만,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취득세 과표의 4/100
(3) 대형(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취득세 과표의 5/100
아. 사업용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취득세 과표의 2/100
2. 자동차 이전등록 (시·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한다)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 1,000cc 이상 1,600cc 미만 (2) 1,600cc 이상	취득세 과표의 3/100 " 4/100

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취득세 과표의 1.5/100
(1,000cc 미만의 경형은 제외한다)	
다.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취득세 과표의 1.5/100
(1,000cc 미만의 경형은 제외한다)	
라. 사업용 승용자동차	취득세 과표의 1/100
(1,000cc 미만의 경형은 제외한다)	
마. 사업용 승합자동차	취득세 과표의 0.5/100
(1,000cc 미만의 경형은 제외한다)	
바. 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취득세 과표의 0.5/100
(1,000cc 미만의 경형은 제외한다)	
사. 비사업용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1) 소형(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취득세 과표의 3/100
(2) 중형(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	취득세 과표의 4/100
하는 것. 다만, 길이ㆍ너비ㆍ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대형(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취득세 과표의 4/100
아. 사업용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취득세 과표의 1/100
3. 그 밖의 허가 및 등록	
가. 도로, 하천, 구거부지 점용허가	점용료 부과액의 5/100
나. 토지형질 변경 허가	
(1) 농지(전, 답)	m²당 1,500원
(2) 산, 임야, 잡종지 등 그 밖의 지목	m²당 3,000원
다. 토석ㆍ사력의 채취허가(「하천법」)	점용료의 5/100
라. 골프장 등록	m²당 60원
4. 각종 계약체결(시, 구·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의 계약	
체결을 포함하며, 계약금액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대금청구액의 2.5/100
나. 물품구매, 수리, 제조 계약	대금청구액의 1.5/100

- ※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 ※ 별표 1에서 규정한 것 외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연도의 잔여기간 동안 매출하게 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그 매입대상 및 금액은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

<u>매입면제대상</u>(제5조제4항 관련)

구 분	매 입 면 제 대 상
1. 매입의무 면제기관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다. 주한 유엔군 및 외국 정부기관 라. 주한 국제기구 및 원조단체 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한국보훈복지의료 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및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 바. 민법・상법상 외의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 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채권매입 의무만을 면제한다) 사. 「정당법」에 의한 정당 아.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매입의무 면제대상 	 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자기명의로 하는 이전등록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 상 주소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의 자동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독립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다. 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국공유재산의 점용허가 및 임대계약
- 라. 피해목 · 수종갱신 벌채허가
- 마. 주민직영사업 및 노임직영사업
- 바.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농어가 주택건설 및 농림어업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건축신고 포함). 다만, 농업인·임업인·어업인과 농림어업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수산업」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사. 일반운영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 물품구매
- 아.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 자. 「석탄산업법」에 따른 탄광지역 진흥사업 추진대상 지역에서의 허가 중 도로, 하천, 구거부지점용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 토석· 사력의 채취허가
- 차. 마을공동 재산을 조성하는 행위
- 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재산의 대체 취득시 등록 및 인허가. 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채권을 매입 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108조 적용대상에 한정한다)
- 타. 법인합병시 자동차 이전등록
- 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 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감면한다.(감면 시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1) 채권매입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을 전액 면제한다. 다만,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는 250만원을 면제한다.
 - (2) 채권매입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매입 금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는 250만원을 공제한다.
- ※ 별표 2에서 규정한 것 외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연도의 잔여기간 동안 매출하게 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그 매입면제대상은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혅 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 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 한 자금을 조달 · 공급하고자 대구 광역시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대구광역시 제2조(기금의 설치) ①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 다)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지역개발기금(이하 "기 금"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지방자 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재원조달) ① 기금은 다음 각 제3조(재원조달) ①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생략)
- 2. 시비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를 포함한다)
- 3. 지역개발공채(이하 "공채"라 한 다) 발행 수입
- 4. (생략)

제1조(목적)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역	개발기금을 설치
하고,	

정

아

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 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 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대구광 역시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 라 한다)을 설치 · 운용한다.

- ② ----- 기금은 「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 - 1. (현행과 같음)
- 2.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 3.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 4. (현행과 같음)
- 5. 특정 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 5. ---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하

얼

<u>하여 일반회계등에서</u> 기금내 별도 회전기금으로 <u>운용하고자</u> 전입·출연하는 금액

- 6. (생략)
- ② (생략)
- 제4조(공채의 발행 및 등록) ①시장 은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대 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 다)의 승인을 <u>얻어 공채를</u> 발행할 수 있다.
 - ② 공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5조 및 제14조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 ③ <u>공채</u>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 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u>의한다</u>. 제5조(공채의 매입대상 등) ① 다음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신규등록(2,000cc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제외) 및 자동차 이전등록의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매입을 면제한다.
 - 1. (생략)
 - 2. 시, 구·군에 신고·등록을 신

 운용하고자 일반회계
<u>등에서</u>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채권의 발행 및 등록) ①
받아 채권을
<u>.</u>
② 채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
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③ <u>채권</u>
따른다.
제5조(채권의 매입대상 등) ①
<u>매입대상 및 매입기</u>
준에 따라 채권을
(2,000cc 이상 비사업용 승
용자동차는 제외한다)
<u>2026년 12월 31일</u>
1. (현행과 같음)
2 <u>등록을 신청하거</u>

청하는 자

3. (생략)

- ②시와 구·군이 다른 조례에 의하여 공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채발행 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출할 수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이 연도중에 전부 매출되었을 경우에는 그 연도의 잔여기간 동안 이조례에 의한 공채를 매출하여야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u>공채매입대상자</u>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채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u>매입대상중</u> 교육 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 ⑥<u>제1항의 공채매입</u> 절차는 규칙 으로 정한다.
- 제6조(공채의 상환 및 이율) ① 제5 조에 따른 <u>공채</u>의 상환은 5년 <u>거</u> <u>치후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u>은 한 국은행 기준금리를 따르되, 연 복

<u>나 신고하는</u>
3. (현행과 같음)
②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u>채권발행 대상에게</u>
그렇지 않다.
③
- 따라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이
<u>연도 중</u>
<u>따른</u>
채권을
④ <u>채권매입대상 중</u> -
따라 채권매
<u>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u>
⑤ <u>채권매입대상 중</u>
· ⑥ <u>제1항에 따른 채권매입</u>
제6조 <u>(채권의 상환 및 이율)</u> ① <u>채권</u> <u>거치</u>
<u>후 일시상환하며, 발행이율</u>

리로 한다.

- ② 시장은 상환기일이 도래되는 공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년도의 최초상환 개시일 1월전에 일간신문 또는 시공보,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공고를 하여야 하면 공채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 ③ <u>공채</u>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 래 이전에 중도상환하지 <u>아니하며</u> 부득이 중도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 칙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의 발행이율은 경제상황,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u>고려하여</u> 1 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공채업무의 위탁) 시장은 <u>공</u> <u>채</u>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u>규칙이</u> 정하는 바에 <u>의하여</u> 금융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 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u>상·하수도사업</u>, 토지 및 주택 개발사업, 도로건설사업 등 지역 개발사업
 - 2. ~ 4. (생략)

•
② <u>채권</u>
<u>의 상환 최초</u>
<u> 상환 개시일 1개월 전</u>
<u>시 공보 따라 상환</u>
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③ 채권
않으며,
_
4
고려하여 기준
금리의
<u> </u>
•
계7조 <i>(</i> 케귀어므이 이타)
제7조 <u>(채권업무의 위탁)</u> <u>채</u> 권
<u> 규칙으로</u> <u>따라</u>
제8조(융자대상) ①
1. <u>상하수도사업</u>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제9조(융자우선순위) 기금은 도로사업, 도시철도사업, <u>상·하수도사업에 우선 융자하되</u>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u>지역간</u>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 사업의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제10조(융자조건) ① (생 략)

② 융자기간은 5년거치 10년균분 상환으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 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 양 또는 사업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상환 기간을 단축·조정할 수 있다.

1. ~ 3. (생략)

- ③ 시장은 제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기금을 당해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제1 항 및 제2항의 규정의 범위에서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의2(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제10조의2(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융자우선순위)
상하수도사업에
<u> </u>
지역 간 -
제10조(융자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 <u>5년 거치 10년 균분</u>
<u> 상환으로 하되,</u>
만료 전이라도
 <u>사업완료 시</u>
<u>- 하며,</u>
·.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u>해당</u>
범위
<u> </u>
•
④ <u>제2항에 따라</u>

- ① 융자는 기금운용관(이하 "운용 관"이라 한다)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u>의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은 운용 관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u>의한</u> 다. ③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자금소요 시기를 <u>참작하여</u> 융자신청서를 운
- ③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자금소요 시기를 <u>참작하여</u> 융자신청서를 운 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 금을 수령한 때에는 융자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의3(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원금
 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
 융기관의 연체대출 이자율을 적용
 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 제11조(기금의 관리) ① (생 략)
 - ② 시장은 <u>기금운용에 있어</u>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u>「지방재정</u>법」 제78조에 따라 당해회계년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u>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u>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u>아니할</u>수 있다.

	①
	<u>따른다</u> .
	②
	<u>따른다</u> .
	③
	· 고려하여
a)	10구시0/스타크시 시리크 기본/
제	10조의3(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
	원리금과 해당
	② (현행과 같음)
제	11조(기금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u>기금운용 시</u>
	39조에 따라 같은 회계년도
	을 <u>전용(轉用)</u>
	<u>경우 전용자금에 대</u> 한 않을
	<u> </u>

-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u>이식증대를</u> 위한 예치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 제1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생략)
 -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제6조에 따른 <u>공채상환</u> 원리금 2.·3. (생 략)
- 제13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u>공채를</u> 발행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u>신청</u>하는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 1. (생략)
 - 2. <u>공채</u>의 발행계획 및 상환계획
 - 3. ~ 5. (생략)
- 제13조의2(회계관직 지정)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 계관직을 둔다.
 - 1. <u>기금운용관</u>: 기획조정실장
 - 2. 분임기금운용관 : 예산담당관
 - 3. 기금출납원 : 지역개발기금업무

 ③ <u>이자증대를 위한 예치 등</u> 제1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현행과 같음) ②
1 <u>채권상환</u>
②
1. (현행과 같음) 2. <u>채권</u> 3. ~ 5.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회계관직 지정)
1. <u>기금운용관:</u> 2. <u>분임기금운용관:</u>

담당사무관 제4장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제14조(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 관 리를 위하여 시에 지역개발기금관 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 다.
 - 1. (생략)
 - 2. 공채발행등 기금조성 방법 가. (생략)
 - 나. 공채발행등 기금조성 방법
 - 다. (생략)
 - 라. 기타 기금운용상 중요하다 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생략)
-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다.

제4장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14조(설치) ①
<u>시장 소속으로 대구광</u>
역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
회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현행과 같음)
2. <u>채권발행 등</u>
가. (현행과 같음)
나. <u>채권발행 등</u>
다. (현행과 같음)
라. 그 밖에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시행규칙)
필요한

관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 제19조(지방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경상적(經常的)인 운전자금(運轉資金)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회전기금(回轉基金)의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건설비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 자금으로 필요한 경우
 -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 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出捐)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5조(지역개발채권 발행절차)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의회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기금조성 및 사업별융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기금운용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7조(기금의 운용기준) ① 영 제15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금의 조성과 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공채발행계획 및 공채상환계획과 사업별·관할지방자 치단체별 융자계획 및 융자금회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기금은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개발효과가 큰 다음 각호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융자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상·하수도, 도로·주택건설 및 유통단지건설등 공공투자사업
- 2. 사업의 수행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경영수익사업
- 3. 의료보장 및 재해복구등을 위한 사업
- 4.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 5. 기타 정부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등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이 개정안은 채권 발행 면제 기준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이 상 규